

음식물쓰레기협기성퇴비화시설민간위탁동의안

의안 번호	52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11. .

제출자 : 파주시장

☐ 제안이유

'99.11월 준공예정인 음식물쓰레기 협기성퇴비화시설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관리하여 전문인력과 경험이 축적된 기술로 처리시설의 운전효율의 극대화를 통하여 예산절감등을 도모하고자 함

☐ 주요골자

가. 파주시 음식물쓰레기 협기성 퇴비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전반

나. 수탁기관은 파주시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

다. 위탁방법은 협약서를 체결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.

☐ 기타참고자료 : 별 첨

음식물쓰레기 혐기성퇴비화 시설 민간위탁계획

□ 시설현황

- 준공예정 : '99. 11월중
- 위 치 :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1039-4번지 일원
- 규 모 : 부지면적 3,300㎡(건축 연면적 860.48㎡)
- 시설용량 : 30톤/일
- 처리방식 : 중온소화 혐기성

□ 민간위탁 추진 원칙

- 신규수요와 관련한 위탁사무는 가능한한 TurnKey방식에 의한 위탁
- 설계, 시공, 운영관리를 처음부터 일괄입찰방식

□ 위탁사무의 범위

- 음식물쓰레기 혐기성 퇴비화시설 운영업무

□ 위탁기간

- 3년으로 하되 연장 가능

□ 수탁업체 선정 방법 및 기준

- 수탁업체의 기구 및 인력, 재정부담능력, 기술보유정도 등을
종합적으로 검토
-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 선정

□ 민간위탁 방법

- 위탁자와 수탁자간 협약서를 체결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

□ 시 직영/민간위탁과의 예상수익 비교

(단위 :천원)

구 분		직 영 관 리	위 탁 관 리	비 고(증감)
처 리 용 량		30톤/일	30톤/일	
운 영 인 력		8인	6인	△ 2인
유 지 관 리 비	총 계	371,580	305,610	△ 65,970
	인 건 비 (기술직 및 일용인부임)	249,600	163,300	△ 86,300
	직 접 경 비 (약 품 비)	31,200	15,830	△ 15,370
	(동 력 비)	26,000	23,180	△ 2,820
	(수선유지비)	31,000	27,300	△ 3,700
	일반운영비	33,780	22,961	△ 10,819
	이 윤		25,257	25,257
부가가치세			27,782	27,782

□ 민간위탁의 효과

- 민간기업에 위탁할 경우 시에서 운영 할 경우보다 일반운영관리비 비용이 20-30% 절감
- 운영관리 분야에 중복으로 소요되는 인력을 최소화
- 기술 및 경험축적이 풍부한 민간기업이 운영함으로써 기술개발이 촉진되고 경쟁력 확보가 가능
- 공정특성에 적합한 운전기술개발 및 적용으로 시설의 안정적 운영 시설의 내구년수 연장 가능
- 혐오시설로 인한 공무원의 근무기피 현상 보완

파주시 음식물쓰레기 혐기성퇴비화시설 관리 위·수탁 협약서

파주시장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과 수탁자 ○ ○ ○ 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은 파주시 음식물쓰레기 혐기성퇴비화시설 관리업무를 위·수탁하기로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

제1조(협약목적) 이 협약은 위탁시설을 효율적, 경제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“갑”이 위탁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“을”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

제2조(위탁시설의 범위) ① 위탁시설의 범위는 “갑”이 “을”에게 인계한 시설과 부대시설물 및 비품을 포함한다

② 위탁기간 중 위탁시설 내 “갑”이 신설한 시설도 “을”에게 인계하여 위탁관리한다

제3조(위탁기간 및 협약변경) ① 위·수탁 운영 개시일은 2000년 월 일로 한다

② 위·수탁 기간은 협약체결 후 인계·인수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한다

③ 협약기간 연장 등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는 “갑”과 “을”이 협의하여 변경한다

제4조(위탁관리비) ① 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에 따른 비용은 “갑”과 “을” 협의하여 연액으로 결정한다.

② 위탁관리비는 “을”이 시설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를 말한다

③ 위탁관리비는 “갑”이 “을”에게 지원한다

제5조(재위탁의 금지) “을”은 수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. 다만, 서면으로 “갑”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

제6조(관계법령 준수) “을”은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음식물쓰레기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.

제7조(업무의 적정관리) ① “을”은 수탁시설의 유지 및 관리운영 등 수탁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② “을”은 수탁시설에 대하여는 “갑”의 승인없이 신, 증, 개축과 폐기, 용도변경등 이용목적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

제8조(시설설비 등의 사용 및 인계) ① “갑”은 위탁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시설, 설비 등을 “을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. 단,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또는 협약이 해제되었을 때는 해당시설, 설비, 비품 등을 즉시 원상복구하여 “갑”에게 인도한다

② 무상 제공할 재산 및 설비, 비품 등은 “갑”이 정하여 “을”에게 인계한다

제9조(협약의 해제) ① “을”이 다음 각호의 1호 해당할 때에는 “갑”은 이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

1. “을”이 “갑”이 위탁한 업무를 수탁하지 않을 때
2. 관계법령 및 “갑”이 제시한 운영관리 지시 및 기준을 3회이상 위반하였을 때

② “갑”은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경우외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“갑”은 이 협약을 해제하려는 날로부터 6개월 전까지 “을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

③ “을”은 “갑”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제10조(관계법령의 적용)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파주시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